【 회원규정 】

1. 자격

회원은 본 연합회의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이사회 가입승인, 회비납입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회원의 구분 및 구성

1)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원사와 회원사로 구분한다. 이사회원사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7인 내외의 상임이사와 20명 내외의 일반이사(회)로 구성한다.

3) 일반회원은 분야별 전문가 및 학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성 한다. 일반회원 중 정회원 가입 희망자는 정회원 기준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년말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회원가입 신청서 및 기타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3. 회비

1) 정회원은 대기업은 1000 만원, 중기업은 500 만원, 소기업은 20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협회 등 단체회원의 경우 1000만원, 3인 참여 가능 / 중소협회의 경우 협의가능)

2) 일반회원은 3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사별 가입 인원 및 의결권

1)회원사별 가입인원은 대기업은 4명 이내, 중기업은 2명 이내, 소기업 및 일반회원은 1명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자료 출판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과 토론 등 본 연합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정 회원이 아닌 명예직이나 위촉직 등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은 말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